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진실규명 신청기간 및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등 〉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73호)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78호)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69호)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16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복기왕의원안], [이훈기의원안], [양부남의원안], [이광희의원안]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8
1. 위원회 구성 확대	8
2.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 신설	13
3.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공개 등	20
4. 직원 임명 및 면직 조건 신설	22
5. 진실규명 신청기간 및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27
6. 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근거 마련	35
7. 과거사 진실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예산상 조치 권한 근거 및 의무 신설	42
8.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신설	46
9. 진실화해재단 설립 의무화	51
10. 준용법률 개정 사항 반영	53

[복기왕의원안], [이훈기의원안], [양부남의원안], [이광희의원안]

I. 제안경위

1. 복기왕의원안

가. 제 안 자 : 복기왕의원 등 44인

나. 제 안 일 : 2024. 8. 1.

다. 회 부 일 : 2024. 8. 2.

2. 이훈기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훈기의원 등 17인

나. 제 안 일 : 2024. 8. 20.

다. 회 부 일 : 2024. 8. 21.

3. 양부남의원안

가.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9. 3.

다. 회 부 일 : 2024. 9. 4.

4. 이광희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16인

나. 제 안 일 : 2024. 9. 5.

다. 회 부 일 : 2024. 9. 6.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복기왕의원안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후 2만 건 이상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 및 배정됐으나 2024년 6월까지 종결된 사건은 6천여 건에 불과하고 조사 진행중인 사건은 7천여 건에 이릅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1년의 조사기간 연장을 감안하더라도 접수된 사건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화해조치와 추가 진상조사 사업의 지원, 기록 및 자료 관리, 피해자 및 유족 보호와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관련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도록 했으나 재단이 건립되지 않아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계기가 되었음. 이에, 과거사연구재단의 명칭을 진실화해재단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조사기간 종료 전까지 진실화해재단이 건립되도록 명문화함.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 사건의 실체적 증거 확인과 유족측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업무를 추진해왔으며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진실규명 활

동임무를 수행해왔음. 그러나 이에 관한 법령상의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필요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검사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됨. 이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유해의 조사·발굴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해발굴 및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유해발굴 및 피해자 추모·위령사업 등을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거사 진실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신설 등).

2. 이훈기의원안

2020년부터 활동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3년간의 짧은 조사 활동기간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요구한 진상규명사건의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되었어도 내년 5월 종료를 앞두고 1천여 건 이상의 사건들이 처리되지 못하거나 졸속 처리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 진실 규명 신청 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편향된 역사 시각을 가진 위원장으로 인해 위원들 간의 합리적 토론이 어려워지고,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어 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는 위원 구성 등이 필요하며,

위원장이 왜곡된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도 견제 수단이 미흡한 상황임.

현행법 제13조에서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한 취지는 논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개별 이념이 아니라 역사해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논의 과정을 비공개로 운영하여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위원 개인의 의견들이 남발하면서 합리적 결론 도출 및 위원회 설립 취지에 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법률에서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이에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원 구성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국회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개정, 제7조에 제5항 신설).

또한,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과거와의 진실된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34조에 제2항 신설 등).

3. 양부남의원안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위한 조사 및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2021년 5월 27일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고, 3년의 조사기간 및 1년의 조사기간 연장을 통해 2025년 5월 26일까지 진실규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2024년 8월 6일 현재 5,821건의 진실규명 조사가 진행 중으로, 남은 약 9개월의 조사기간으로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진실규명 신청사건의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고, 진실규명 신청기간의 도래로 과거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호소하고 있어 조사기간의 연장과 더불어 진실규명 신청기간의 연장도 필요한 상황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또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더라도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초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

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멸시효 연장의 필요성도 있음(안 제36조의2 신설).

다만, 신청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과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위원회가 편향된 역사 시각을 가진 조직으로 운영될 경우, 위원회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왜곡된 조사로 인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위원회 소속 일부 직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본인의 얼굴도 드러내지 않은 채 편향된 시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업무수행과 다양한 의견이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본인의 성명, 직위, 얼굴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되도록 하여 소속 직원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소속 직원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소속 직원 구성에 투명성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그 외 현행법이 준용하고 있는 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제4호).

4. 이광희의원안

과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수사 기관의 증거조작 또는 고문 등의 불법수사 등 초법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

이 다수 존재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국가적 노력을 진행한 바 있음.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상 관련 법령이 제정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국가배상청구권이 「민법」상의 소멸시효 문제로 희생자의 권리가 제한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18. 8. 30 이루어진 헌법소원심판(2014헌바148)에서 동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일반적인 사인간의 불법행위 내지 국가배상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 유형에 해당함으로써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의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또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헌법 제10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제29조제1항 국가배상청구권 보장필요성을 완전히 희생시킬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당 사건들에 대해 위헌성과 국가배상의 책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효배제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위원회 구성 확대(이훈기의원안 제4조)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구성을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위원회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 행	이훈기의원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13명-----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 ----- -----10 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 대통령이----- ----- -----구 성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명 을-----.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상임위원은 대통령

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위원 4명을 추가하되, 국회의장 및 대법원장이 각각 2명을 지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과 이훈기의원안의 위원회 구성 비교>

현 행 법			→	이훈기의원안	
지명·선출권자		위원 수(상임위원 수)		위원 수(상임위원 수)	
- 대통령 지명		1명(1명)		1명(1명)	
- 국회 선출	국회의장	-		2명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4명(1명)		4명(1명)	
	그 외 교섭단체	4명(1명)		4명(1명)	
- 대법원장 지명		-		2명	
계		9명(3명)		13명(3명)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 기한을 법률 제1739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0.12.10.부터 2년으로 하고 있는데,¹⁾ 2024년 9월 25일 기준 접수된 사건이

1)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9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

20,679건으로 나타났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당시 총 신청 건수는 11,175건이었던 데 비해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 위원회의 신청 건수를 9천 건 이상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원 증원을 통한 진상규명 활성화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기·2기 진실화해위원회 비교>

구 분	1기	2기
조사기간	최초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u>4년(2년 이내 연장)</u>	최초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u>3년(1년 이내 연장)</u>
신청기간	법 시행일로부터 <u>1년 이내</u>	법 시행일로부터 <u>2년 이내</u>
신청건수	신청 <u>11,175건</u> - (진실규명) <u>8,450건</u> - (규명불능·각하 등) 2,725건	신청 <u>20,679건</u> (’24년 9월 기준) - (진실규명) <u>7,298건</u> - (규명불능·각하 등) 5,966건

2024년 9월말 현재

※ 자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또한 국회의장 및 대법원장이 위원을 지명하도록 하는 등 위원 구성 경로를 다양화함으로써 보다 다각적인 관점의 진상규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근거가 된 법률 제17392호 진실·

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20. 6. 9. 개정, 2020. 12. 10. 시행)에서 위원회 구성을 위원 9인(상임위원 3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의 구성이 마련된 것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²⁾

이와 관련하여 2019년 9월 제371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에서는 국회가 8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명을 지명하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 위원회 구성 방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었음.³⁾

또한, 2019년 9월부터 약 8개월간 2회의 안전조정위원회, 2회의 전체회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0년 5월에 의결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진실규명 신청 건수의 증가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진실규명 신청 건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 외에 진실규명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

2)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7건)

- * [2001599]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의원 등 47인)
- * [20054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7인)
- * [200798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
- * [200548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4인)
- * [200535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60인)
- * [200610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의원 등 11인)
- * [20175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2인)

3) 대안반영폐기된 의안들은 상임위원 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으나,

안전조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윤재옥위원, 이채익위원 등이 대통령 지명 4명, 국회 선출 8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구성이 국회의장 추천 1명,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추천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추천 4명으로 구성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과 비교할 때 공평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함.

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등 실무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 등도 있을 것인 바,⁴⁾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확대 및 위원 지명권자의 경우 입법부인 국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4) 진실화해위원회의 공무원정원은 현행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총계 136).

2.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 신설(이훈기의원안 제7조)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이훈기의원안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④ (생략) <u><신설></u> 1. ~ 5. (생략) ③ ~ ⑤ (생략)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u>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헌법 제65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과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수행함.⁵⁾

5)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탄핵소추 관련 헌법 규정>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의 입법위임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은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헌법 및 개별법 상의 탄핵소추 가능 대상 및 근거>

구 분	대 상	근 거
헌 법	①대통령 ②국무총리 ③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④헌법재판소 재판관 ⑤법관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⑦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⑧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대한민국헌법」 제6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8조
개별 법률 - 직접적인 근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및 제16조제5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개별 법률 - 간접적인 근거 (해임사유, 신분보장 조항)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검찰총장,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검사징계법」 제24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무직공무원(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진실화해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처장을 지휘하는 등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을 가지는 등 위원회 및 그 산하조직의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책임이 크다고 하겠음.

개정안은 이러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원장 및 위원회의 합헌적이고 합법률적인 직무수행에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임.

<「과거사기본법」에 따른 위원장의 권한>

위원장 업무 권한	근거규정
위원회 대표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업무를 통할	
대통령에 대한 의안제출 건의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위원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사유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의결을 한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위원 면직 제청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회 회의 주재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사무처장 지휘	제14조(사무처의 설치)
사무처장 임명 관한 제청	
사무처 3급 이상 공무원 임명 제청	
사무처 4급 이하 공무원 임명	
자문기구 구성원 위촉권(위원회 의결 필요)	제1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증인출석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검증실시통보서 발부(위원회 의결 필요)	제24조의3(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24조의7(검증)
공무원 파견근무 요구	제29조(공무원의 파견 등)
과태료 부과	제47조(과태료)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당연퇴직 사유),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면직 찬성의 의결을 받은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면직 사유)가 아니면 당연퇴직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면직당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위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민주적·대의적 통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⁶⁾⁷⁾

또한, 탄핵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동법상 위원회 결격사유에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신분보장 규정 등 비교>

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위원회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신분 보장 및 면직 제한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 6)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임.(1996. 2. 29. 선고 93헌마186)
- 7) 참고로,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는 「경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된 것인데, 그 사유는 ‘임기제 도입에 대한 통제수단 보완 필요성’임.
 [“경찰청장의 임기제 도입에 따른 국회의 통제수단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경찰법중개정법률안(김무성의 원동 67인, 제162349호) 심사보고서」]

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위원회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가 확정된 경우 ③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결격 사유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4. 5. (생략)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③ (생략)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 6.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탄핵 소추 근거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④ (생략)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④ (생략)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현행 면직사유 및 결격사유⁸⁾ 규정에 따라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그

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직에서 면직되거나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⁹⁾ 등 주요 합의제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기관장에 대한 탄핵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한 국가기관도 다수 존재하므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 마련 여부는 탄핵의 필요성, 직위의 중요도,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기구의 예에 비추어 볼 때¹⁰⁾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규정 신설은 이례적이라 볼 수 있으나, 이는 입법자인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2. (생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6의4·7·8. (생략)

9)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개별법에서 위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0)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기구의 경우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규정을 두지 않음.

3.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공개 등(이훈기의원안 제13조의2 신설)

개정안은 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보존, 공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이훈기의원안
<신설>	제13조의2(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성·보존 및 공개의 범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의사를 공개하도록 하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는 관행적으로 전체위원회마다 위원들에게 의사 공개 여부를 묻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고 내용은 공개, 심의·의

결 내용은 비공개해왔는데, 심의·의결 내용이 비공개됨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의 불투명성·모호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¹¹⁾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보존, 공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위원회 회의의 투명성·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따라 회의록 전체 공개를 원칙으로 하게 될 경우, 오히려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통한 활발한 논의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화는 회의록 작성의 필요성, 위원회 회의의 투명성 제고 가능성, 회의록 공개에 따른 자유로운 의견 개진 축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미 「과거사정리법」 제13조에서 위원회의 의사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의 장소, 일시, 출석위원 수, 안건명, 발언 위원 및 그 발언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할 경우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부인 국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11) 진실화해위 “서약서 동의 안 하면 감사 우선 대상” 불이익 예고, 한겨레, 2024.7.15.

4. 직원 임명 및 면직 조건 신설(양부남의원안 제16조의2 신설)

개정안은 위원회 직원의 인적사항 공개의무를 신설하고, 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직원을 임명하거나 임명 제청하기 전에 임명대상자가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공개를 거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명대상자를 임명하거나 임명 제청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 직원이 본인의 성명, 직위,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 면직하거나 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양부남의원안
<신 설>	제16조의2(직원의 임명 제한) ① 위원회 직원은 공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 본인의 성명, 직위, 얼굴(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직원을 임명하거나 임명 제청하기 전에 임명대상자가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공개를 거부하거나 거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명대상자를 임명하거나 임명 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u>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해당 직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자일 경우에는 임명권자에게 직권 면직을 요청할 수 있다.</u> <u>④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면직시키거나 임명권자에게 면직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u>⑤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임명권자에게 면직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9호¹²⁾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u>
--	--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고,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지므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됨.

1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그런데, 최근 진실화해위원회의 간부직원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편향된 시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및 국정감사에서조차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고집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되고 있음.¹³⁾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 직원의 인적사항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인적사항 미공개 시 직권면직 또는 면직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위원회 소속 직원 구성에 대한 투명성 및 소속 직원들의 책임감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과 같이 공무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¹⁴⁾

13) "홈페이지에 얼굴 버젓이"...마스크 논란 '국정원 출신' 진화위 국장 재차 퇴장, 뉴시스, 2014.10.10.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

「국세기본법」 15) 등의 개별법은 신상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법률은 특정 범죄의 피의자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 고액 상습채납자 등의 신상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기타 개별법에서 신상 등을 공개하는 사유와 비교하여 적절

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15)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20. 12. 2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이하 이 조에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라 한다)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등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이하 “조세포탈범”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

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인적사항 미공개에 따라 면직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동일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적격심사 부적격 판정 사유는 근무성적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르는 경우 등인 것임을 감안할 때, 위원회 직원의 인적사항 미공개가 적격심사 부적격 판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인적사항 공개에 대하여 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책임감 확보 측면의 공익과 직원들의 개인정보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직권 면직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직권 면직 사유들과 비교하여 볼 때 근무성적 평정과 관계없이 단순히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일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보편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임.

개정안들은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이훈기의원안)으로, 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양부남의원안),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복기왕·이훈기·양부남의원안)하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년 이내의 범위’(복기왕의원안)로 변경하려는 것임.

– 27 –

위원회가 구성 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u>3년간</u> 진 실 규 명 활 동 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 내에 진실규명 활동을 완료하 기 어려운 경 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 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 고 <u>1년</u>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 ----- ----- ----- <u>-5년간-</u>----- -----. ② ----- ----- ----- ----- ----- ----- ----- ----- ----- ----- ----- ----- <u>-3년-</u>----- ----- ----- ----- -----. ③ (현행과 같 음)	----- ----- ----- ----- <u>-5년간-</u>----- -----. ② ----- ----- ----- ----- ----- ----- ----- ----- ----- ----- ----- ----- <u>-1년-</u>----- ----- ----- ----- -----. ③ (현행과 같 음)	----- ----- ----- ----- <u>-5년간-</u>----- -----. ② ----- ----- ----- ----- ----- ----- ----- ----- ----- ----- ----- ----- <u>-1년-</u>----- ----- ----- ----- -----. ③ (현행과 같 음)
---	---	---	---

먼저, 진실규명 신청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로 하

여금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20.12.10.~2022.12.9.)에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기간 내에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해 미해결된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¹⁶⁾

이에, 이훈기의원안은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20.12.10.~2022.12.9.)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2020.12.10.~2025.12.9.)로 변경하고 양부남의원안은 진실규명신청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미해결된 과거사사건의 추가접수 및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의 입법화와 관련하여서는 신청기간 연장으로 추가되는 진실규명사건을 충분히 조사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조사기간 연장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진실규명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고, 해당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16) 형제복지원 ‘남겨진’ 피해자들, 야속한 국가에 또 운다, 부산일보, 2024.8.27.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82018034795378>

경우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당초 조사기간 만료일은 2024년 5월 26일까지였으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여¹⁷⁾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까지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음.

개정안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원칙적인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복기왕·이훈기·양부남의원안)하고, 연장할 수 있는 조사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년 이내의 범위’로 2년 확대(복기왕의원안)하려는 것으로, 개정안들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의 최대 조사기간은 4년(3년+1년)에서 8년(5년+3년, 복기왕의원안) 및 6년(5년+1년, 이훈기·양부남의원안)으로 변경됨.

<현행 및 복기왕의원안·이훈기의원안·양부남의원안 비교>

구 분	현 행	복기왕의원안	이훈기의원안	양부남의원안
신청기간	법 시행일로부터 <u>2년</u> (2020.12.10.~ ~~2022.12.9.~~)	법 시행일로부터 <u>2년</u> (2020.12.10.~ ~~2022.12.9.~~)	법 시행일로부터 <u>5년</u> (2020.12.10.~ ~~2025.12.9.~~)	<u>2025년 12월 31일까지</u> (2020.12.10.~ ~~2025.12.31.~~)
조사기간	조사개시 후 <u>3년</u> (2021.5.27.~ ~~2024.5.26.~~)	조사개시 후 <u>5년</u> (2021.5.27.~ ~~2026.5.26.~~)	조사개시 후 <u>5년</u> (2021.5.27.~ ~~2026.5.26.~~)	조사개시 후 <u>5년</u> (2021.5.27.~ ~~2026.5.26.~~)
조사기간 연장	<u>1년</u> (2024.5.27.~ ~~2025.5.26.~~)	<u>3년</u> (2026.5.27.~ ~~2029.5.26.~~)	<u>1년</u> (2026.5.27.~ ~~2027.5.26.~~)	<u>1년</u> (2026.5.27.~ ~~2027.5.26.~~)
보고서 작성기간	조사기간종료후 <u>6개월</u> (2025.5.27.~ ~~2025.11.26.~~)	조사기간종료후 <u>6개월</u> (2029.5.27.~ ~~2029.11.26.~~)	조사기간종료후 <u>6개월</u> (2027.5.27.~ ~~2027.11.26.~~)	조사기간종료후 <u>6개월</u> (2027.5.27.~ ~~2027.11.26.~~)

17) 2024.1.23. 진실화해위원회 제71차 전체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의결안’ 의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측면을 살펴보면,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기간(2020.12.10.~2022.12.9) 동안 접수된 사건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비해 약 2배 가량인 20,679건으로 접수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비해 조사기간은 더 짧게 규정되어 있는 바,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2024년 9월 기준 6,622건의 조사가 진행 중으로, 그간의 처리 속도(39개월간 14,009건 월평균 약 359건)를 감안할 때, 조사기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임.

<1기·2기 진실화해위원회 비교>

구 분	1기	2기
조사기간	최초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u>4년(2년 이내 연장)</u>	최초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u>3년(1년 이내 연장)</u>
신청기간	법 시행일로부터 <u>1년 이내</u>	법 시행일로부터 <u>2년 이내</u>
신청건수	신청 <u>11,175건</u> - (진실규명) <u>8,450건</u> - (규명불능·각하 등) 2,725건	신청 <u>20,679건</u> (’24년 9월 기준) - (진실규명) <u>7,298건</u> - (규명불능·각하 등) 5,966건

2024년 9월말 현재

※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명, '24. 9. 25. 기준)

구분	신청 건수	배정* 건수	검토 중	상정 중	조사 개시	직권 조사	사전 조사	진실 규명	규명 (확인)	불능	각하	기타**
계	20,246	20,679	19	15	6,622	7	9	7,298	745	86	3,942	1,938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129	131	-	1	30	1	-	20	-	6	61	12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9,957	10,028	1	1	4,526	1	-	2,986	394	16	682	1,421
인권침해·조작의 혹확정판결사건	2,889	3,255	16	13	1,123	3	9	1,509	4	23	418	137
적대세력 관련 사건	3,885	4,060	2	-	686	2	-	2,355	347	41	297	332
역사적 중요한 사건	202	216	-	-	179	-	-	26	-	-	8	3
3·15의거 사건	492	493	-	-	73	-	-	402	-	-	1	17
기타	2,692	2,496	-	-	5						2,475	16

* 배정건수: 조사국에 배정된 사건으로 조사과정 중 사건 분리·병합 등으로 신청 건수와 차이가 있음

** 기타: 취하 및 여순사건 이관 사건 등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추가적인 조사 수요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이 조사기간을 연장한다면 다양한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진상규명 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반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기간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근거가 된 법률 제1739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함) 일부개정법률」(2020.6.9.)에서 조사기간을 개정 이전보다 단축하기로 한 입법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한시적 조사법으로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도 있음.

2019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7건의 안건이 병합 심사되었는데,¹⁸⁾ 제 371회 국회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2019.9.6.)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상설적인 위원회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4년(2년 연장 가능)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은 추가적인 구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1기보다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었음.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번안동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위원회안을 반려받아 제377회 국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을 번안 의결(2020.5.19.)하였는 바, 번안 의결된 안건의 수정 내용 중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¹⁹⁾

이렇게 볼 때,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비해 접수 건수가 증가하였다

18) * [2001599]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의원 등 47인)
* [20054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7인)
* [200798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
* [200548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4인)
* [200535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60인)
* [200610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의원 등 11인)
* [20175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2인)

19) 조사기간 단축 이외에, 상임위원 수를 변경하되 배상 문제, 진실규명 범위, 진실규명사건의 요건 등은 개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고는 하나 이는 신청기간을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비해 장기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법 개정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주어진 조사기간의 범위 내에서 진실규명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 당시 국회의 결정 취지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은 진실규명 조사의 진행 상황, 추가적인 조사 수요, 조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입법정책적 결정의 취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포괄적 과거사 정리라는 법 제정의 의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봄.

한편, 2024년 10월말 현재 현행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 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연장된 조사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연장 가능한 기간의 상한을 확대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 충실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주어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중인 사건의 규모와 난이도, 주어진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을 고려할 때 '25년 5월 26일까지 조사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사기간 및 신청기간 연장은 국회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6. 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근거 마련(복기왕의원안 제23조의2 신설)

개정안은 위원회로 하여금 진실규명과 관련된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유해발굴, 유전자검사 및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복기왕의원안
<신설>	<u>제23조의2(유해의 조사·발굴 등) ①</u>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하여 제22조에 따른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이하 “희생자의 유해”라고 한다)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다. <u>②</u>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u>③</u>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관련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희생자의 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 유가족이 확인된 유해: 유가족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송하거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봉안시설에 안치한다.

2. 유가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유해: 위원회가 지정하는 봉안시설에 안치한다.

⑦ 위원장은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희생자의 유해의 인정기준·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의 조사·발굴을 마친 때에는 해당 토지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여 제43조의3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3조의3(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 신원과 그 가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43조의3(손실보상) ① 위원회는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의 조사·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땅파기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땅파기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희생자의 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의 기본을 정하고 있음에도 유해발굴, 유전자검사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음.

개정안은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진행함으로써 희생자, 피해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을 위로하는 한편,

조사·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조사·발굴과정에서 사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할 경우 그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²⁰⁾ 「5·18민주화운동

20)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토지·공유수면(公有水面)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고, 조사·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하려는 때에는 조사·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을 마친 때에는 해당 토지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여 제13조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21) 등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사 입법례에서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타인의 토지·공유수

⑥ 제2항의 조사·발굴계획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조사·발굴계획의 내용·수립방법 및 통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손실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조사·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땅파기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땅파기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유해의 조사·발굴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7호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희생자의 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 유가족이 확인된 유해: 유가족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송하거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2. 유가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유해: 유가족이 확인될 때까지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해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국립묘지에 보관 또는 봉안하거나 안장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희생자의 유해의 인정기준·절차와 신원확인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면 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발굴과정에서 손실을 입힌 경우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해발굴 및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한편, 현행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화를 고려할 경우 개정안 제23조의2 제3항의 전사자유해는 희생자의 유해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 규명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한 신원 확인 및 안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임.

7. 과거사 진실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예산상 조치 권한 근거 및 의무 신설(안 제33조 또는 제34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개시사건의 진실규명 또는 희생자 등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복기왕의원안),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이훈기의원안).

현행	복기왕의원안	이훈기의원안
제33조(국가기관 등의 협조 의무)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3조(국가기관 등의 협조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에 따른 조사개시사건의 진실규명 또는 제36조에 따른 조치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제3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 ----- ----- -----필요 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 -----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신 설></u>	----- ----- -----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진 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 을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수립하고 시행하 여야 한다.
--	--

현행법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로 하여금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적대세력 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한 권고사항 중 유해발굴, 위령사업, 증언채록 등의 소관기관으로 행정안전부(주관)와 지방자치단체(협조)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있음.

그 중 유해발굴 사업은 권고와는 별개로 진실화해위원회 자체 예산 으로 직접 진행하는 사업과 국고보조금 교부를 통한 유해발굴 자치단

체 보조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는데, 진실화해위원회는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유해발굴을 희망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이에, 개정안들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사개시사건의 진실규명 또는 희생자 등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아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 희생자 추모·위령사업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해발굴 등의 사업을 직접 진행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근거법령 미비로 인해 유해발굴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유해발굴사업 등의 예산상 조치 실행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이훈기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진실규명사건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개정안들의 입법화를 고려할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인력 등에 차이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진실규명 또는 조치이행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복기왕의원안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희생자 유해발굴 및 피해자 추

모·위령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안이며,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진실규명결정에 근거한 권고 이행 및 희생자 추모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내용 수용 입장임.

8.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36조의2)

개정안들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하되(양부남·이광희의원안), 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하려는 것임(양부남의원안).

현 행	양부남의원안	이광희의원안
<신 설>	제36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제1항 ²²⁾ 및 제766조 ²³⁾ 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²⁴⁾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제25조에 따른 조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6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22)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23)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주관적 기산점, 「민법」 제766조제1항) 및 불법행위를 한 날(객관적 기산점, 「민법」 제166조제1항, 제766조제2항)이고, 그 시효기간은 각각 주관적 기산점으로부터 3년 및 객관적 기산점으로부터 5년임.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66조제1항, 제766조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을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 4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장기간의 불법구금·고문 등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판결을 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저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행위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생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음.

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4)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헌법재판소 결정(2018.8.30., 2014헌바148등, 위헌, 합헌)>

[결정요지 중 발췌]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하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에 규정된 사건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주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장기간의 불법구금·고문 등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판결을 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저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행위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생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에 규정된 사건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사건 유형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이에, 개정안들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하되(양부남·이광희의원안), 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하려는 것

(이광희의원안)으로, 이를 통해 과거사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들은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과 주관적 기산점을 구분하지 않고 소멸시효에 대한 적용 자체를 배제하고 있고,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 4호 사건 외에 모든 사건²⁵⁾에 관하여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소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목적은 피해구제의 폭을 넓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이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8. 12., 의안번호 제2728호)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등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

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자 및 그 유족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 배제 등을 포함한 보상 규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이와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음.

<별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입법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이 내려진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과거사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의 폭을 넓히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특례규정 신설보다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한 배·보상법 입법 시 이에 대한 별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방식이 보다 적합하다는 입장임.

9. 진실화해재단 설립 의무화(복기왕의원안 제40조)

개정안은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진실화해재단을 위원회의 조사기간 만료 전에 설립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복기왕의원안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u>과거사연구재단</u> 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40조(<u>진실화해</u> -----) ① ----- ----- <u>진실화해</u> ----- <u>제25조에서 정한 조사기간</u> <u>만료 전에 설립하여야 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정부가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²⁶⁾ 현재까지 과거사연구재단은 설립되지 아니한 상황으로, 제1기 위원회는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²⁷⁾를 통해 과거사연구재단(가칭 “진실화해재단”)의 설립을 촉구하기도 하였음.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은 다른 형태의 자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3.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④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27)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진실화해위원회)

이에, 개정안은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진실화해 재단을 위원회의 조사기간 만료 전에 설립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위원회가 이룬 성과를 계승하고, 화해와 국민통합이라는 과거사정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령 사업과 사료관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현행법 제40조제3항에 규정된 재단의 사업 중 ‘추가 진상조사 사업의 지원’의 경우 국가기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상정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수행될 것인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

따라서,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 의무화는 재단이 수행하게 될 역할, 국민적 공감대 및 위원회 조사기간의 연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진실규명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서 재단설립이 필요한바, 진실화해재단을 위원회 조사기간 종료 전까지 설립할 의무를 명문화한 개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임.

10. 준용법률 개정 사항 반영(양부남의원안 제7조 및 제9조)

개정안은 현행 「과거사정리법」이 준용하고 있는 타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현행	양부남의원안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③ (생략)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 ²⁸⁾ 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국가재정법」 제6조 ²⁹⁾ -----.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생략) 1. ~ 3. (생략)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② (생략)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공직선거법」----- ----- ----- ② (현행과 같음)

28) 「예산회계법」

제14조 (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29)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이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이 제정(법률 제8050호, 2006. 10. 4., 제정)되면서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법」은 각각 폐지되었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이 준용하고 있는 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현행 법령 정비를 통한 법체계 및 법 집행상의 통일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수용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